

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(제15판) 개정 전·후 비교표

<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>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1	<p>I. 대응원칙</p> <p>1. 법적 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세계적인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등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「감염병예방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'제2급감염병'으로 대응함 * (근거)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」(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7호) 제1호가목 ○ (현행과 같음) <p>2. 대응방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에 따른 '권고' 및 '자율' 기조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 절차로 전환 ○ 향후 발생 상황, 변이 발생 여부,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정의와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 가능하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·항만의 코로나19 관련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,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	<p>1. 법적 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따른 '제4급감염병'으로 대응함 * (근거)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」(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8호) 제2호가목 ○ (현행과 같음) <p>2. 대응방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에 따른 '권고' 및 '자율' 기조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검역 대응 수행 ○ (현행과 같음) ○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검역업무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용함 	<p>지자체용 대응지침(제4판) 반영 등</p>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2	<p>II. 사례정의 등</p> <p>1. 사례정의</p> <p>◆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 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* * 한시 시행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</p> <p>○ 확진환자 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</p> <p>▶ 한시 시행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 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</p>	<p>1. 사례정의</p> <p>◆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 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* * 한시 시행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</p>	<p>지자체용 대응지침 (제4판) 반영</p>
3	<p>2. 감염병의심자 정의(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, 2023.5.19 시행) ○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</p>	<p>2. 감염병의심자 정의(①~③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, 2023.5.19 시행) ○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④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인 사람</p>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
4	<p>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</p> <p>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</p> <p>[주요 추진경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 ◆ 검사희망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중단('23. 6. 1.~) <p>□ 유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3 738 1039 1134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유증상자</td> <td rowspan="2">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</td> <td>양성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</td> </tr> <tr> <td>음성</td> <td>무증상자 절차에 따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유증상자	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<p>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</p> <p>[주요 추진경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 ◆ 검사희망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중단('23. 6. 1.~) ◆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변경: 전세계 → 미지정('23.7.15.~) <p>□ 유증상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81 738 1998 1134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PCR 검사</th> <th>검사 결과</th> <th>조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유증상자</td> <td rowspan="2">검역소 (격리관찰시설 또는 별도 공간 검체채취)</td> <td>양성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</td> </tr> <tr> <td>음성</td> <td>무증상자 절차에 따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유증상자	검역소 (격리관찰시설 또는 별도 공간 검체채취)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검역관리 지역 변경사항 반영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
유증상자	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																	
	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
구분	PCR 검사	검사 결과	조치사항																				
유증상자	검역소 (격리관찰시설 또는 별도 공간 검체채취)	양성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입소시설*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																				
		음성	무증상자 절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
5	<p>3. 입국검역</p> <p>◆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검역 정보 입력 후,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*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*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</p>	<p>3. 입국검역</p> <p>◆ 검역관리지역발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,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*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*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</p>																				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5	<p>3. 입국검역 가. 입국검역 개요 ○ (대상) 모든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</p>	<p>3. 입국검역 ○ (대상) 검역관리지역발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 * 검역관리지역 외 입국자는 개별 발열감시 실시</p>	
6	<p>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 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- 유증상자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등 독립된 공간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** 실시 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*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</p>	<p>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 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- 유증상자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등 독립된 공간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** 실시 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*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 ※ 국내 거소지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격리관찰시설(실)에서 대기 가능</p>	
7	<p>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- (검역관)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(실)로 함께 이동 * 검역관은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</p> </div> <p>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의) 기초역학조사[서식 5] 후 PCR검사 실시 *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D) 착용 - (유증상자) 독립된 공간(검역조사실,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)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관찰시설(실) 등에서 임시 격리</p>	<p>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- (검역관) 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[서식 13] 작성 후 코로나19 의심 시 별도의 격리공간(실)으로 함께 이동 및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에게 인계 * 검역관은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</p> </div> <p>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의) 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 참고하여 사례 분류 시 PCR검사 실시 * 역학조사 시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 - (유증상자) 독립된 공간(검역조사실,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)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관찰시설(실) 등에서 임시 격리 가능</p>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10	<p>IV. 항만 검역대응 절차</p> <p>2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[주요 추진경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 ◆ 검사희망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중단('23. 6. 1.~) </div>	<p>2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[주요 추진경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 ◆ 검사희망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중단('23. 6. 1.~) ◆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변경: 전세계 → 미지정('23.7.15.~) </div>	
11	<p>4. 검역조사</p> <p>가. 승선·비승선 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비승선 검역) 서류(전자)검역 대상 선박 경우 전산을 통해 검역조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전산 심사결과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 시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<p>나. 하선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검역정보 확인)검역관이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*으로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도 가능 ○ (증상분류)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감시 결과 증상 분류 	<p>4. 검역조사</p> <p>가. 승선·비승선 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비승선 검역) 서류(전자)검역 대상 선박 경우 전산을 통해 검역조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전산 심사결과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 시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* 서류검역의 경우, 선박 자체 발열감시 가능(검역통보일자 또는 선박입항일자에 발열체크를 수행하고, 발열체크 결과 검역소에 제출) ** 여객터미널이 있는 여객선/크루즈선 검역은 선박자체 발열감시 제외 (검역관이 검역대에서 개별 발열감시 직접 수행) <p>나. 하선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검역정보 확인)검역관이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*으로 함 * 단,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도 가능 ○ (증상분류)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감시 결과 증상 분류 	<p>검역 조치 현행화 등</p>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12	<p>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유증상자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또는 선내 독립된 공간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** 실시</p> <p>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</p> <p>*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</p> <p>※ 크루즈선 내 선의가 시행한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시</p> <p>① 선내에서 5일 격리 권고(격리 중 국외 출항하는 경우 IHR 통보)</p> <p>② 하선을 희망할 경우 검역단계에서 검역소 검체채취 실시(PCR 검사)</p> <p>③ 확진자 발생 운송수단 감염 예방 조치 실시(이동금지, 선박소독, 비대면 하역 작업 등)</p> <p>④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및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로 크루즈선 내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메모보고 실시(종합상황실 확진자 통계 보고는 제외)</p> <p>-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,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(필요시,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병상 배정 요청)</p>	<p>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유증상자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또는 선내 독립된 공간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** 실시</p> <p>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</p> <p>*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</p> <p>※ 크루즈선 내 선의가 시행한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시</p> <p>① 선내에서 5일 격리 권고(격리 중 국외 출항하는 경우 IHR 통보)</p> <p>② 하선을 희망할 경우 검역단계에서 검역소 검체채취 실시(PCR 검사)</p> <p>③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운송수단 감염 예방 조치 실시(선박소독 등)</p> <p>* 선박 자체 소독 수행(소독결과보고서 확인,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 사용 확인 등)</p> <p>④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및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로 크루즈선 내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메모보고 실시(종합상황실 확진자 통계 보고는 제외)</p> <p>-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,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(필요시,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병상 배정 요청)</p>	4급 전환에 따른 조치 완화
13	<p>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</p> <p>- (검역관)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(실)로 함께 이동</p> <p>*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</p> <p>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</p> <p>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) 기초역학조사[서식 5] 후 PCR검사 실시</p> <p>*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D) 착용</p>	<p>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</p> <p>- (검역관)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[서식 13] 작성 후 코로나19 의심 시 별도의 격리공간(실)으로 함께 이동 및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에게 인계</p> <p>*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</p> <p>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</p> <p>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)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참고하여 의심 환자 사례분류 시 PCR검사 실시</p> <p>* 역학조사 시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</p>	4급 전환에 따른 조치 완화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15	<p>V. 진단검사 및 격리 조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▷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 - 단,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*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-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</div> <p>1.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</p> <p>○ (개인보호구)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 D) 착용[부록 3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※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</p> </div> <p>○ (검사의뢰)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(공문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[서식 8]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 ** 관할 질병대응센터에서 해외출입국관리팀(메모보고) 실적 송부 <p>○ (검사수행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<p>○ (결과회신)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(공문 등)</p> <p>○ (양성 확인) PCR 검사결과 '양성'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(유선보고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, 양성 확인 시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으로 보고 - (양성보고) 양성인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,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- (최초 양성 판정)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 판정 시,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 및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 	<p>V. 진단검사 및 격리 조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▷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 - 단,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*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-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</div> <p>1.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</p> <p>○ (개인보호구)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[부록 2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※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</p> </div> <p>○ (검사의뢰)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(공문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[서식 8]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 **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실적 보고 <p>○ (검사수행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<p>○ (결과회신)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(공문 등)</p> <p>○ (양성 확인) PCR 검사결과 '양성'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(유선보고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, 양성 확인 시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으로 보고 - (양성보고) 양성인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,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- (최초 양성 판정)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 판정 시,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 및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 	<p>4급 전환에 따른 조치 완화</p>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16	<p>2.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임시 격리 (이하 생략)</p>	<p>2. <삭제></p>	
16	<p>3.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(입국 후 및 하선 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 - (양성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격리 권고* 안내, 필요시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병원(중증 이상) 이송**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택격리는 국내에 거주지(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)가 있는 경우에 한함 ** 세부적인 확진자 이송 및 격 절차는 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따름 - (미결정) 추가검사 실시하여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, 공중보건의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권고 여부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례정의 및 판정 등은 VIII. 기타 행정사항 → 재검출자 사례 참고 ○ (검사결과 보고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총괄팀, 해외출입국관리팀에 인적사항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출발지 등) 및 결과 보고 	<p>2.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(입국 후 및 하선 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 - (양성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격리 권고* 안내, 필요시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병원(중증 이상) 이송**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택격리는 국내에 거주지(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)가 있는 경우에 한함 ** 세부적인 확진자 이송 및 격 절차는 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따름 - (미결정) 추가검사 실시하여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, 공중보건의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권고 여부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례정의 및 판정 등은 VIII. 기타 행정사항 → 재검출자 사례 참고 ○ (검사결과 보고)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 일일현황 보고 	4급 전환에 따른 조치 완화
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			
17	<p>1.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환자 발생 보고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, 검역정책과,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)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강상태질문서,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- (조치결과) 확진환자 이송(병상배정 포함)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 	<p>1.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환자 발생 보고) 최초 인지한 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역정보관리 내 검역일일현황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강상태질문서,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- (조치결과) 확진환자 이송(병상배정 포함)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 ○ (환자 발생 통보) 검역소는 '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(또는 공문)을 	4급 전환에 따른 조치 완화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	<p>○ (환자 발생 통보) 검역소는 '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'(또는 공문)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에 환자 발생 통보</p> <p>*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거나 확진자를 해당 선박 내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</p> <p>※ 국내 거소지가 없는(혹은 불분명한) 외국인의 경우,</p> <p>○ (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)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</p> <p>○ (무증상·경증 확진자)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 격리 입소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</p> <p>* 단, 통보 절차는 검역소 소재 보건소와 협의 가능</p> <p>- (관련 자료 공유)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로 FAX 또는 공문 전송</p> <p>- (통보방법) 프로그램 내 '비고(특이사항)'란에 ①검역소명, ②입국일 ③방문국가 ④국적 ⑤체류기간 등 작성 후 통보</p> <p>2. 격리병상 배정 요청</p> <p>○ (검역관)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확진자의 경우, 시·도 연락담당관으로 병상 배정 요청,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</p> <p>*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</p> <p>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임시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</p> <p>○ (시·도 연락담당관) 지역 내 병상 배정여부 확인, 해당시설에 병상(실) 가동준비 요청 및 병상 배정 결과·담당자 번호를 검역소에 공유</p> <p>※ 검역단계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</p>	<p>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에 환자 발생 통보</p> <p>*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거나 확진자를 해당 선박 내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</p> <p>※ 국내 거소지가 없는(혹은 불분명한) 외국인의 경우,</p> <p>○ (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)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</p> <p>○ (무증상·경증 확진자)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 격리 입소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</p> <p>* 단, 통보 절차는 검역소 소재 보건소와 협의 가능</p> <p>- (관련 자료 공유)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로 FAX 또는 공문 전송</p> <p>- (통보방법) 프로그램 내 '비고(특이사항)'란에 ①검역소명, ②입국일 ③방문국가 ④국적 ⑤체류기간 등 작성 후 통보</p> <p><삭제></p>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	<p>○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인천공항검역소) 내.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 요청 * 다만, 확진자 중 급격한 호흡곤란, 의식저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(거점)전담병원에 이송,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공유(서울, 인천, 경기 지역 환자일 경우에는 '수도권 긴급대응반'에 공유) ** 중수본-1994호(2021.1.18.) 참고 <p>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임시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</p> <p>※ (인천공항 확진자 이송)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검역소 앰블런스로,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·도에서 담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타 검역소) 검역소 소재지 시·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, 검역소 소재 시·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<p>○ 무증상·경증 확진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가용 및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자가 또는 숙소 등에서 격리 권고 * 국내 거소지가 없는(혹은 불분명한) 입국자의 경우,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 권고(비용자부담) <p>3. 확진 환자 이송 및 인계</p> <p>가. 확진자 이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재택치료 대상자 이송) 자차 및 방역택시(비용 자부담) 이용하여 귀가 ○ (재택치료 불가자 이송) 병원에 확진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KF94 마스크 착용 유지 -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-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(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) 착용 	<p>2. 확진 환자 이송 및 인계</p> <p>가. 확진자 이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진자 5일 격리권고 안내 및 귀가 또는 필요시 병원 방문 안내 ○ <삭제> ○ <삭제> 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	<p>○ (재택치료 불가자 인계) 이송요원은 병원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(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 설명)</p> <p>- 검역소 구급차가 없을 경우, 지원 구급차(보건소 또는 119구급차) 이송요원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인계 및 환자 상태 설명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</p> <p>○ (이송수단) 검역소·보건소·119·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(본인·동거가족 운전) 및 방역(일반) 택시 이용 가능하며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</p> <p>*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: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 자제</p> <p>○ (방역수칙) KF94 등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,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,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, 하차 후 차내·외 표면소독, 운전시 창문 개방,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</p> <p>*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</p> </div> <p>나.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(항만)</p> <p>○ (조치사항)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,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(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)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권고</p> <p>*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: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</p> <p>** 선내 격리 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(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)</p> <p>○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5일 격리 이후 하선 권고</p> <p>○ (하역작업 등) 선박 소독 완료, 동승 선원 중 유증상자 PCR검사 결과 확인,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, 선원교대 등</p> <p>○ (추가검사)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</p>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</p> <p>○ (이송수단) 검역소·보건소·119·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(본인·동거가족 운전) 및 방역(일반) 택시 이용 가능하며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</p> <p>*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: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 자제</p> <p>○ (방역수칙) KF94 등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,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,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, 하차 후 차내·외 표면소독, 운전시 창문 개방,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</p> <p>*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</p> </div> <p>나.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(항만)</p> <p>○ (조치사항)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,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(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)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권고</p> <p>*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: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</p> <p>** 선내 격리 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(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)</p> <p>○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5일 격리 이후 하선 권고</p> <p>○ (하역작업 등) 선박 소독 완료, 동승 선원 중 유증상자 PCR검사 결과 확인,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, 선원교대 등</p> <p>○ (추가검사)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</p>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	※ 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(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) ○ 검역소장 판단 하에 진단검사,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	※ 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(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) ○ 검역소장 판단 하에 진단검사,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	
	VII. 접촉자 관리		
	1. 접촉자 조사 (이하 생략)	<삭제>	4급 전환에 따른 삭제
18	VIII. 기타 행정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행정조치)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, 이동금지 등 조치, 소독이행여부 확인 ○ (관계기관 협조요청) 항공사*, 출입국관리사무소, 세관,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*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요청 등의 업무는 항공사와 협의 ○ (검사결과 확인)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○ (이송수단 등 소독) 공·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(실),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- 코로나19 관련 「집단시설대중이용시설 소독안내」 및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소독 실시 ○ (폐기물 처리)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, 격리시설(실)의 경우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폐기물 처리 ○ (검역관지원인력 감염관리) 현장검역,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행정조치)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, 이동금지 등 조치, 소독이행여부 확인 ○ (관계기관 협조요청) 항공사*, 출입국관리사무소, 세관,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*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요청 등의 업무는 항공사와 협의 ○ (검사결과 확인)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○ (이송수단 등 소독) 공·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(실),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* 및 확인 * 운송수단(항공기, 선박) 자체 소독 수행(소독결과보고서 확인,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(http://ecolife.me.go.kr) 사용 확인 등) - 코로나19 관련 「집단시설대중이용시설 소독안내」 및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소독 실시 ○ (폐기물 처리)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, 격리시설(실)의 경우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폐기물 처리 	4급 전환에 따른 조치 완화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검역인력)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,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 권고 - (검역지원인력)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, 유증상자·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검역 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,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 해제 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 가능 - (공항만 상주기관 직원)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 시,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○ (재검출자 사례) 국내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입국 또는 상륙 후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사례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재검출)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검사 또는 RAT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○ (단순 재검출)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,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,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○ (재감염 추정)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- 최초 확진일 이후 45-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(또는 해외여행력)이 있는 경우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례판정)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,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검역관·지원인력 감염관리) 현장검역,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히 수행 - (검역인력)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,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 권고 - (검역지원인력)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, 유증상자·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검역 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,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 해제 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 가능 - (공항만 상주기관 직원)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 시,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○ (재검출자 사례) 국내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입국 또는 상륙 후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사례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재검출)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검사 또는 RAT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○ (단순 재검출)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,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,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○ (재감염 추정)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- 최초 확진일 이후 45-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(또는 해외여행력)이 있는 경우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례판정)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,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	<p>※ 사례 판정 주체 :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</p> <p>○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국내·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(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)를 통해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,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</p> <p>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</p> <p>② 성명, 생년월일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</p> <p>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</p> <p>※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</p> <p>- (환자관리) 단순 재검출의 경우에는 '음성'과 동일한 조치, 재감염 추정사례의 경우에는 '양성'과 동일하게 조치함</p> <p>* 미결정자가 단순재검출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검사는 실시하지 않음</p> <p>- (보고·통보) 확진자 통보 시 사례판정 결과 포함</p> <p>○ (건강상태질문서) 보관기간 1개월</p>	<p>※ 사례 판정 주체 :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</p> <p>○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국내·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(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)를 통해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,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</p> <p>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</p> <p>② 성명, 생년월일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</p> <p>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</p> <p>※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</p> <p>- (환자관리) 단순 재검출의 경우에는 '음성'과 동일한 조치, 재감염 추정사례의 경우에는 '양성'과 동일하게 조치함</p> <p>* 미결정자가 단순재검출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검사는 실시하지 않음</p> <p>- (보고·통보) 확진자 통보 시 사례판정 결과 포함</p> <p>○ (건강상태질문서) 보관기간 1개월</p>	
20	<p>서식 2 검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(검역소→법무부)</p>	(삭제)	
24	<p>서식 5 기초역학조사서(검역소용)</p>	(삭제)	
29	<p>서식 10 격리대상자 관리대장</p>	(삭제)	

p	현 행(14-3판)	개 정(15판)	개정사유
32	<div data-bbox="114 240 226 304" style="background-color: #4a86e8; color: white; padding: 2px;">서식 12</div> <div data-bbox="248 240 1032 304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접촉자 조사 양식</div>	(삭제)	
33	-	<div data-bbox="1081 344 1193 408" style="background-color: #4a86e8; color: white; padding: 2px;">서식 13</div> <div data-bbox="1216 344 2000 408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유증상자 통합조사·분류표</div>	신설

※ 부록 변경사항은 생략